

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개정 2024. 7. 10.>

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(제39조의3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내용
1.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제38조의3제2항 제1호	○ 사업정지(20일)
2.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경우	제38조의3제2항 제2호	○ 1 차: 사업 정지 (20일) ○ 2 차: 사업 정지 (30일)
3.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	제38조의3제2항 제3호	○ 1차: 사업정지 (20일) ○ 2차: 사업정지 (30일) ○ 3차: 사업정지 (50일)
4.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	제38조의3제2항 제4호	○사업정지(20일)
5.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(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)	제38조의3제2항 제5호	○사업정지(20일)
6.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(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)	제38조의3제2항 제6호	○사업정지(20일)

비고

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2.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